

개정정관 전문

2012.10.12. 제 정
2013. 7.30. 농식품부 허가
2015. 3. 3. 농식품부 허가
2016. 6.16. 농식품부 허가
2018. 8.27. 농식품부 허가
2020. 3.16. 농식품부 허가
2323. 6.05. 농식품부 허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농어업재해보험협회(이하 "농재협"이라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The Korea Association of Agricultural & Fishery Insurance on Natural Disaster(KAFIND)"으로 한다.

제2조(목적) 농재협은 변화하는 농어업환경에 대응하고, 새로이 발생하는 농어업분야의 재해실태조사 및 연구, 농어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임산물, 양식수산물, 가축과 농어업용 시설물의 손해보상을 위한 손해평가인력의 교육 및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 업무를 수행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3.3., 2016.6.16.>

제3조(조직) 농재협 조직은 총회, 이사회, 회장, 사무처, 지회로 구성하고 필요시 위원회 둔다.<개정 2020.3. 16.>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농재협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1 5층'에 둔다. 다만, 필요시 지방사무소(지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3.7.30., 2018.8.27. 2023. 6.05.>

제5조(사업) 농재협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보험대상 현황, 피해 규모 및 원인 등 보험 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 통계자료를 수집·관리

2. 농어업 재해피해조사 및 대책연구

3. 농어업재해 손해평가인력 교육 훈련 <개정 2015.3.3.>

3의2.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신설 2016.6.16.>

3의 3. 손해평가제도 개선과 관련된 조사·연구, 관련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업무 <신설 2023.0.00>

3의 4. 손해평가 업무에 필요한 조사 장비, 의류 등 회원들의 처우 개선에 관한 업무 <신설 2023.0.00>

4. 재해보험 제도 및 상품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 관련 기술 개발 및 전문인력양성 등의 진흥시책

4의2.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도서 출판 <신설 2015.3.3.>

4의3. 농재협 발간물 등에의 광고 게재 <신설 2015.3.3.>

5. 그 밖에 정부 또는 보험사업자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신설 2015.3.3>

제2장 회원

제6조(회원) ① 농재협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개정 2018.8.27.>

② 정회원은 본 협회의 설립목적에 찬성하여 회비 납부의무를 이행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3.16., 2023.6.05.>

1.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라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자

2.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손해평가사

3. 농어업정책보험 조사·연구업무 종사자 <신설 2020.3.16.>

③ 준회원은 협회에 입회한 자 중 제2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④ 특별회원은 농업재해보험과 관련된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위촉 한다.

⑤ 제8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 경과되어야, 제8조제2호 및 4호에

해당 하는 자는 3년이 경과하여야 새로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이사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0.3.16.>

[제목, 전문 개정 2018.8.27.]

제6조의2(회원의 가입) ① 농재협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 신청서를 농재협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의 가입절차 및 입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16. 6. 16., 2020.3.16.>

제7조(회원의 권리) 농재협의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3호의 권리만을 갖는다.<개정 2018.8.27., 2020.3.16.>

1. 협회의 임원 등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
2.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급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3. 기타 농재협의 회지 등 발간물을 제공 받을 권리 등
4. 임원(회장,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소환권<신설 2023.6.05.>
5. 기타 각 규정이 정하고 있는 권리<신설 2023.6.05.>

제7조의2(회원의 의무) 농재협 정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다만, 준회원 및 특별회원은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정관·제규정 및 윤리강령의 준수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등 결의 사항의 준수의무
3. 회비 납부의무

제8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회원의자격을 상실한다.<개정 2018.8.27.>

1. 본인의 탈퇴신고가 있을 때
2. 제 7조의 2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이사회의 제명결의 처분을 받

았을 때

3. 회원이 사망하였을 때

4.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그 자격이 취소되었을 때

5.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서 3년이상 활동을 하지 않았을 때 <신설
2020.3.16.>

제9조(회원의 자격정지) 협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개정
2018.8.27.>

1.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2. 회원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권리정지 또는 회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제9조의 2(포상 및 회원의 징계) ① 회장은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협회사업에 유공한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다만, 외부인사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 결을 거쳐야 한다

②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1. 농업재해보험법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를 받았을 때

2. 정관 제7조의 2의 규정의 1호, 2호를 위반하여 회원 자격정지 처분을 받아쓸 때

3. 회원의 행위가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품위를 손상케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4. 회원으로써 보고 및 자료제출 의무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③ 제2항에 의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

2. 3개월 이하의 권리정지

3. 3개월 이상 1년 이내의 회원자격 정지

4. 제명처분

④ 회장은 회원의 포상 및 징계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윤리위원회를 통하여 관련사항을 조사·심의 등을 할 수 있으며, 윤리위원회 구성, 회원의 업무배제 등 세부 내용은 회원규정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0.3.16.]

제3장 임원 및 직원

제10조(임원 및 감사) 농재협에는 다음의 임원과 감사를 둔다.

1. 회장 1인
2. 이사 15인 이내(회장 포함) <개정 2020.3.16.>
3. 감사 2인 이내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이사, 정회원 또는 덕망이 있는 외부인사 중에서 정회원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다만, 후보자가 정회원일 경우에는 연속하여 20개월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에 한한다. <개정 2018.8.27. 2023.6.05.>

② 이사는 연속하여 20개월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다만, 회장의 제청을 받은 후보자가 외부인사 경우에는 예외)중에 이사회 의결과 총회의 동의를 받은 자로 한다.(단, 당연직인 지회장 겸임 이사가 지회장 임기 변동 등으로 변경시에는 차기 총회에서 추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8.27., 2020.3.16., 2023.6.05.>

③ 임기중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임원중에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다만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6.05.>

⑤ 회장 등 임원의 선출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신

설 2018.8.27.>

제11조의 2(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 11조 5의 규정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 6조에 의하여 손해평가사 및 손해평가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또는 손해평가인의 위촉의 취소 및 해지 된 자
2. 공무원 임용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3. 임원이 되고자하는 회원의 경우, 임원 선출공고일 현재 회비의 완납(납부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이 되지 아니한 자
4. 본 정관에 의하여 제명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및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만, 총회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20.3.16. 개정 2023.6.05]

제11조의 3(직무대행) ① 회장의 사고시 회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지정하지 않은 경우 또는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이사 중 호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되는 이사회는 이사 중 최연장자가 주재한다.

[본조신설 2023.6.05.]

제12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농재협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 농재협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이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본항 개정 2023.6.05.)

1. 이사회에 출석하여 중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

2. 총회로부터 필요한 직무를 부여받아 수행

3. 이사회 소위원회에 위원으로서 부여받은 업무 수행

④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정운영을 감사하는 일

2. 법인의 업무집행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정운영 또는 업무집행에 있어 불법, 부당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 6.05.>

② 보궐을 통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다만, 이사가 궐위된 경우라도 궐위되지 않은 이사의 수가 8인 이상 일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임기만료 등의 경우) 임원의 사임 또는 임기만료 된 경우라도 이사의 수가 8인 미만인 때에는 임기 만료된 임원이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자격상실에 의한 퇴임) 임원이 11조의 2에 의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임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0.3.16.>

제16조(임원의 소환) ① 임원(회장, 이사, 감사 등)이 농재협의 명예를 훼손, 목적에 반하는 행위, 임원의 직무를 위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회원의 30% 이상이 발의한 임원소환의 경우, 해당 임원은 반드시 총회(임시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

[제목, 전문 개정 2023.6.05.]

제17조(위원회) 농재협의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각 분야별 위원회 및 농업재해보험 관련 조사, 연구, 관련 기술개발 및 보험제도 등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20.3.16.>

1. 위원회의 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회장이 선임한다.
3.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① 농재협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두고, 사무처에는 사무총장을 사무 총괄 책임자로 두고, 필요한 사무인력을 둔다.<개정 2013.7.30., 2020.3.16.>

② 제1항의 사무총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13.7.30., 2020.3.16.>

③ 제1항의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담당업무를 처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3.7.30., 2020.3.16.>

④ 사무처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3.16.>

⑤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규정, 보수규정, 복무규정 등 필요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신설 2013.7.30., 2020.3.16., 2023.6.05.>

제19조(사무총장의 임기) 제 18조 제1항에 규정한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3.7.30., 2020.3.16.>

제19조 2(명예회장 및 고문) ①회장은 이사회에서 의결한 외부인사를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임회장이나 경영·법률·노무·회계 등 협회 운영에 필요한 자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3.16.]

제4장 회의

- 제20조(회의 종류)** ① 농재협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분하며, 총회는 최고의결기구로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③ 정기총회는 매 년 2월에, 이사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한다. 단, 임시총회와 이사회는 필요한 때에 이를 개최한다.
- ④ 총회에 필요한 정회원의 명부는 회의소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 <개정 2018.8.27.>

- 제21조(회의의 소집)** ① 총회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 ② 회장은 이사회의 결의나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③ 회장은 이사 3분의1이상 또는 감사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한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④ 총회는 개최 1주일 전에 회의 목적 및 부의 안건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회원들이 회의참석에 지장이 없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 제22조(총회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제23조(서면에 의한 의결 및 의결권의 위임)** ①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된 사항에 한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회장은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6.05.>
- ②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표결할 수 있고, 다른 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때 서면으로 표결

하거나 표결을 위임한 경우에는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서면 결의에 대하여 전체 정회원의 30% 이상 또는 5인 이상의 이사가 회의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3.6.05>

제24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승인
2. 수입·지출의 예산 및 결산의 승인<개정 2020.3.16.>
3. 정관의 변경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
5. 기타 법인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및 이사회에서 부의한 사항

제25조(이사회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사업계획의 수립
2. 수입·지출의 예산 및 결산의 사전심의<개정 2020.3.16.>
3. 정관변경 및 법인 해산에 관한 사전심의
4. 재산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신설 2020.3.16.>
5. 각종 규정의 제·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0.3.16.>
6. 기타 법인운영 및 업무집행에 관하여 회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23.6.05.>
7. 회원의 제명처분<신설 2023.6.05.>

제25조2(회의 의결 제척사유) ① 회원 또는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본조 신설 2023.6.05.]

제26조(이사회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회의록) 회의의 의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의결권 있는 회원 총수(이사회인 경우 이사 총수)
3. 의결권 있는 회원(정회원) 중 출석한 회원의 수(또는 이사의 수)
- 표결권을 위임한 회원 또는 이사의 수
4. 의사의 경과, 회의안건 및 발언자의 발언요지(안건별 의결 세부사항)
5. 참석 정회원이 서명한 참석회원 명부(별지 작성)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28조(재정수입) 농재협(지회)의 사업수행을 위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8.8.27.>

1. 입회비
2. 연회비
3. 협회(지회) 발전 기여금 <개정 2018.8.27.>
4. 정부 위탁업무 수행비
5. 정부 출연금
- 5의2. 도서판매 수익, 광고 수익 등 농재협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
<개정 2018.8.27.>
6. 기타 수입

제28조의 2(사업준비금 적립 및 사용) ① 농재협은 매년 결산결과 잉여금

이 있는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잉여금을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23.6.05.>

② 매년 결산 결과 손실금이 발생하면 사업준비금으로 보전하고, 보전후에도 부족이 있을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한다.

③ 매년 결산 결과 제1항에 따른 사업준비금 적립과 제2항의 손실금 보전 이후 잔여 잉여금이 있을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해 사용할 수 있다.

④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신설 2023.6.05.>

[본조 신설 2020.3.16.]

제29조(회비) ① 회원의 회비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며, 회원은 이를 납입하여야한다.<개정 2018.8.27.>

1. 입회비
2. 연회비
3. 특별회비(목적 수행을 위해 부과)

② 제 1항의 회비 납입금액중 입회비는 이사회에서 정하고, 연회비 및 특별회비(협회발전기여금 등) 금액 또는 납입비율은 총회에서 정한다.<개정 2018.8.27., 2023.6.05.>

제30조(예산의 의결, 결산의 승인) ① 농재협의 매년도 수입·지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이사회 의 결의를 거쳐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6.>

② 수입·지출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당해 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과 함께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3.16.>

③ 총회의 승인 이전에 집행하는 예산은 필요경비에 한하여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고, 특별히 사업성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한다.<신설 2020.3.16.>

제30조의 2(재산의 관리) ①농재협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기본 재산은 설립 당시에 기본 재산으로 정한 재산과 본 협회가 취득한 부동산 및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킨 재산으로 하고,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③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0.3.16.]

제30조의 3(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고, 감사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05.]

제30조의 4(임원 등에 대한 재산 대여 금지)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자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법인의 설립자

2.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본조 신설 2023.6.05.]

제31조(특별회계) 농재협은 수익사업을 행하거나 또는 기타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2조(회계연도)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장 정관의 변경 및 해산

제33조(정관의 변경) 정관은 총회에서 의결권이 있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3.6.05.>

제33조의2(등기보고) ① 다음 각호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3주간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10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② 분사무소설치의 등기 및 사무소이전 시에도 제1항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23.6.05.>

제34(해산, 잔여재산의 처분) ① 농재협은 민법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할 수 있다.

② 농재협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본 농재협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단체에 기증하거나 국고에 귀속한다.

제34조의2(서류의 비치) 농재협 사무소에는 다음의 서류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23.6.05.>

1. 회원명부(현행으로 기록유지 하여야 함)
2. 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3. 연도별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4. 연도별 예산 및 결산서(증빙서 포함)
5. 연도별 회비수납 현황
6. 재산현황 등

[본조 부칙에서 이관 2020.3.16.]

제7장 보칙

제35조(시행세칙) ①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를 따로 정한다.

② 이 정관이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8.8.27.>

제36조(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3.6.05.]

부 칙 <2012.12.10.>

제1조(발효)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발효된다.

제2조(서류 비치) 삭제 <본조 본칙이관 2020.3.16.>

부 칙 <2013.7.30.>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3.3.>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6.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 된 자는 제6조 및 제6조의2의 규정에 따라 회원이 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8.8.27.>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16.>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05>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전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하

여 선임된 임원은 차기 임원선거일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하며, 제11조(임원의 선임 및 해임)은 차기 임원선거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한다.